

답 변 서

사 건 2000가단000 임차보증금반환

원 고 ○○○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

청구취지에 대한 답변

-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구원인에 대한 답변

- 1.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사실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사실은 부인합니다.
- 2.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
 - 가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소외 ◉◉●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차기간 2년, 임차보증금 30,000,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주민등록전 입신고를 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소외 ◉◉●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 - 나.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다세대 주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호수의 기재가 있어야 대항력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원고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므로 피고에게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.

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.



입 증 방 법

1. 을 제1호증

건축물대장등본

1. 을 제2호증

주민등록표등본(원고)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2000. 0. 0.

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내에 답
할 받은
제256
것으로
고되기
아니함
변서를
로 제
11.41
L, 부인
변과 동
·니하고
투지 아
백(자백
기(기기 1 서로
1997.
1 1007. 한 변론
 답변서
BO마H403
& 1400 술되거
르 전체
- 뜨개 다1424
/- 1 1 2/1
등록을
나 특정
그 임
ㅡ ㅁ 대법원
7 B E 주민등
·성되면
) 기교] 경우,
-]이 위
- ' '! 신고 및
그
를 등기
- 0 기 기 주민
' ' _ 표시와
1994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변론과 그 준비 >> 답변서